

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윤은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규제로 심의·의결된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이 조례 적용대상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 조항 삭제(안 제4조제3항)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규제로 심의·의결된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